

'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1. 제안이유

도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'92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유재산관리운영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도유재산의 취득 및 무상대부에 관한 계획

가. 취득재산

○ 덕유초소 부지매입(경찰청 소관) 2필지 2,176㎡ 10,000천원

-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-1 일야 1,707㎡
-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 일야 469㎡

(취득사유)

- 초소개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초소근무자 사기양양
- 대청호 불법담시 단속용으로 상수원 보호역량 향상

나. 무상대부재산

○ 충북체육고등학교시설 부지내 편입 도유지 2필지 2,758㎡ 556,350천원상당

- 청주시 사직동 798 운동장 750㎡ 510㎡
- 청주시 사직동 807 * 2,603㎡중 2,248㎡

※ 건물신축후 부지면적비율에 의하여 건물 기부채납 조건부 무상대부

(대부사유)

- 학교시설 편입 도유지 무상대부를 통한 학교건립 실현으로 체육인재 양성
- 체육인재 양성을 통한 도위선양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2도유재산관리계획(안) : 별첨

5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도유재산관리계획

1992년도 관리계획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2	2,176	10,000	-	-	-	2	2,176	10,000	
	1. 대 입	2	2,176	10,000	-	-	-	2	2,176	10,000	
	2. 교환으로 취득										
처분	3. 기타 취득										
	계										
	1. 매 각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2. 양 여										
	3. 교환으로 처분										
	계	2	2,758	556,350	-	-	-	2	2,758	556,350	
사용 및 대부허가		2	2,758	556,350	-	-	-	2	2,758	556,350	

(무상)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(7-7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	재산가액	허가기간	무상대부(사용허가)근거	비고
	종별	소재지	지목·구조	수량				
1	무상대부	○ 청주시 사직동 798	운동장	510m ²	12,350	'92-	○ 청주제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○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	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부지
2	"	○ 청주시 사직동 807		2,248m ²	544,000	'92-		
계		2 필지	운동장	2,758m ²	556,350			

199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(7-2-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번호	계 산 표 시			수 정 가 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, 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	
1	임 야	○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-1	1,707m ²	7,800	'92. 3-4	덕유초소부지	○ 청원군수	
2	임 야	○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	469m ²	2,200	.	.	○ 청원군수	
계		2 필 지	2,176m ²	10,000				